



‘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정부기업 구현’

우정공무원교육원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우정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허가 규정 개정

1. 관 련

- 가. 우정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허가 규정(우정공무원교육원 훈령 제161호)
- 나. 우정공무원교육원 훈령 및 예규 제정세칙(우정공무원교육원 훈령 제148호)
- 다. 교육지원과-6653(2016.12.22. 교직원 등 생활관 이용에 대한 개선사항)

2. 우정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허가 업무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『시설사용허가 규정』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겠습니다.

가. 개정이유

- o 공무원행동강령(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금지)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
- o 복리후생 및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설사용 명문화

나. 주요 개정내용

- o 미래창조과학부의 시설사용에 대한 유료화(제9조)
- o 직원 복리후생 및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설사용료 부과(제9조)
- o 개인 사용에 대한 근거조항 마련(제5조)
- o 시설사용료의 동절기 및 하절기 가산적용 폐지(제8조)
- o 시설임대 원가계산 용역결과에 따른 시설사용료 반영(식비 100원 인상 등)

붙임 1. 시설사용허가 규정 주요개정사항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2. 시설사용허가 규정 전문(개정) 1부. 끝.

주무관

최형원

시설운영팀장

안승일

교육지원과장

박래구

원장

12/26
이영구

협조자 운영지원팀장

류희발

시행 교육지원과-6717 (2016. 12. 26.) 접수 ()

☎ 31068 충남 천안시 동남구 양지말1길 11-14(유량동) / koreapost.go.kr
전화 [041\)560-5151](tel:0415605151) /전송 041)560-5289 / kagea@korea.kr / 공개